

이 통지서를 보관하고 심리에 지참하십시오

뉴욕주 시본 배부처:

XXXXX 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 XX XXXXXX

사회복지법 제22조에 의거 및 귀하의 공정심리 요청에 대응하여 귀하의 심리가 다음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A 공정심리 번호 XXXXXXXX	F 심리 장소 NY OTDA 공정심리 ID 요구됨 보안 체크 사정 청취
B 부조 상태 공정심리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지역 사무소는 지원을 변함 없이 계속하도록 지시됩니다/지시되지 않습니다. 뒷면의 제8항 참조	G 기관 XXX/XXX/XXX
C 대리인	H 시간 XX:XX 오전/오후
D 발행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I 카테고리 및 케이스 번호 XX/XXXXXXXXXXXXXXXXXX
E 일자 XX/XX/XX	J 심리 요청일 XX/XX/XX 신규

당사자 지시 사항

1. 기관이 귀하의 지원, 급여 또는 서비스를 변경했기 때문에 심리를 요청한 경우, 귀하는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귀하의 지원, 급여 또는 서비스를 변함 없이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경우에 주 커미셔너는 공정심리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귀하의 지원, 급여 또는 서비스를 변함 없이 지속하도록 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지시하지 않았습니다.
2. 예정된 시간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14 Boerum Place, Brooklyn, NY 소재 우리 사무소에 직접 또는 877-209-1134에 전화로 또는 <http://otda.ny.gov/oah>에서 온라인으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양식을 인쇄하여 우리에게 우송하거나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심리일로부터 10일 미만 전에 접수된 연기 요청서는 충분한 처리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기 요청이 수락되었다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출두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허용될 것입니다. 심리 과정 동안에 지원, 급여 또는 서비스를 변함 없이 계속 받고 있는데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기가 허용된 경우에만 귀하의 지원, 급여 또는 서비스는 심리 결정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출두하지 않거나 또는 불출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면 귀하의 지원, 급여 또는 서비스가 변경 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지각하면 귀하의 심리가 연기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귀하 또는 대리인이 예정된 심리에 출두하지 않으면 심리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하 또는 대리인이 캘린더 복원을 요청하고 불출두에 대한 타당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귀하의 심리 요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4. 공정심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진술문에 서명하여 본 통지서를 OTDA, Administrative Hearings, P.O. Box 1930, Albany, NY 12201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인은 본인의 공정심리 요청을 철회하기 원합니다.

서명 일자

뒷면에 추가 지침 있음

당사자 지시 사항

- 1) 귀하의 심리에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본 통지서; 증인, 있는 경우; 문서 증거, 귀하의 요청에 관련된 현지 기관 통지서 포함; 장부, 기록 및 기타 서면 증거.
- 2) 귀하는 문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증인을 대동하기 위해 그리고 반대 증인 및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대리인(변호사 이외)은 귀하를 대리하기 위한 서면 승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 3) 귀하는 심리에서 언어 또는 수화 통역자를 무료로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자를 확보하려면 본 통지서 앞면에 있는 NYS OTDA 주소로 편지를 쓰거나 (800) 342-3334로 전화하십시오(구두 또는 청각 장애: 711의 NY Relay Services로 전화하여 교환원에게 (877) 502-6155의 우리에게 전화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4) 지역 기관은 귀하, 대리인 및 증인을 위한 교통편과 택아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경우 본 심리 참석 관련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기관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다는 의사의 확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비용의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 5) 귀하의 케이스 기록을 열람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공정심리에서 귀하의 케이스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귀하의 케이스 기록에 있는 정보가 심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귀하의 심리일 전에 귀하가 그것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은 한 귀하의 케이스 기록을 검토할 목적을 위해 심리가 연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케이스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공정심리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케이스 기록 검토 또는 열람의 거부는 행정법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6) 귀하는 지역 기관이 심리에 제시할 문서의 사본뿐만 아니라 기타 귀하가 심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요청시 무료로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귀하에게 발송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기관이 그러한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행정법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7) 그러한 문서를 요청하거나 귀하가 어떻게 귀하의 케이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그 조치와 관련하여 공정심리를 요청한 지역 기관에 전화하거나 편지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귀하의 케이스 파일 및/또는 어떤 문서의 추가 사본을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기관에 전화하거나 편지해야 합니다.
- 8) 지역 기관이 공정심리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귀하의 지원, 급여 또는 서비스를 변함 없이 지속하도록 지시되었는데도 귀하가 원조 지속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귀하의 지역 센터(지역 기관)에 갖고 가서 FH 및 C 섹션의 복지사와의 상담을 요구하십시오(NYC 외부의 의뢰인은 자신의 복지사와의 상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 9) 지정된 행정법 판사가 귀하의 심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할 수 없다고 귀하가 믿을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심리시에 다른 행정법 판사의 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